

특허청 위임전결규정 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위임전결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가.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(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, '20. 7. 14. 공포·시행)에 따라 신설되는 벤처형 조직 관련사항 반영

◇ 주요내용

가. 벤처형 조직 전결사항 신설(안 별표1의 2-4)

- 특허빅데이터담당관 신설에 따른 전결사항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

나. 기타 관련사항(안 제5조제2항)

- 청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벤처형조직인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도록 함